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386호 2015. 2. 27.(금)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94호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수당 등 지급 규정 ---------- 2

회람										

발행 : 사천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86호(2)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94호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수당 등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2월 2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한 사천시 민간암행어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장소) 명칭은 사천시 민간암행어사(이하 "민간암행어사"라 칭한다)라 칭하며, 사무실은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공보감사담당관에 둔다.

제3조(역할) 사천시 민간암행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및 복무상황 등 제보
2.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제보
3. 생활민원 방치 제보
4. 그 밖에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민간암행어사는 읍면동별 1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원 읍면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자격과 임명) 제4조에 따른 민간암행어사의 임명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1. 공고일 현재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된 만18세 이상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청렴결백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하고, 거주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

제6조(수당 등)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